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가합507375 판결 [구상금 등 청구]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연우

변론 종결2018. 7. 18.

판결 선고2018. 8. 1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362,023원 및 위 금원 중 184,456,898원 대하여는 2017. 11. 20.부터, 125,340,618원에 대하여는 2017. 11. 22.부터 피고 A는 2018. 2. 14.까지, 피고 B은 2018. 2. 20.까지 연 1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연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연우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6. 접수 제790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에는 등기번호가 '제79908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79008호'의 오타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2013. 7. 17.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기간 2013. 7. 17.부터 2014. 7. 17.까지, 신용보증원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18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은 2017. 11. 30.까지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4. 7. 9.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기간 2014. 7. 9.부터 2015. 7. 8.까지, 신용보증원금 136,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122,400,000원, 신용보증기한은 2017. 11. 30.까지로 변경되었다.

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출금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3. 7. 18. 이 사건 제1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2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8. 1. 이자를 연체하였고, 국민은행은 2017. 8. 22. 원고에 피고 회사의 이자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1. 20.

국민은행에 184,456,898원(원금 180,000,000원 + 이자 4,456,898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7. 9. 이 사건 제2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44,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7. 19. 이자를 연체하였고, 신한은행은 2017. 8. 1. 원고에 피고 회사의 이자 및 원금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1. 22. 신한은행에 125,340,618원(원금 122,400,000원 + 이자 2,940,618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고, 원고는 위 대위변제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1,564,507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연우(이하 '피고 연우'라 한다)는 2013. 11.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 회사에 화장품 용기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4. 4.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연우와 채권최고액을 148,371,339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연우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6. 접수 제790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에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구상금 합계 311,362,023원(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84,456,898원 +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25,340,618원 + 대지급금 1,564,507원) 및 그 중 184,456,898원에 대하여 2017. 11. 20.(대위변제일)부터, 125,340,618원에 대하여 2017. 11. 22.(대위변제일)부터 피고 회사는 2018. 2. 14.(소장 송달일)까지, 피고 B은 2018. 2. 20.(소장 송달일)까지 각 연 10%(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연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일인 2017. 11. 20. 또는 2017. 11. 22.부터 7개월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이미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2017. 8. 1. 피고 회사의 이자 및 원금 미변제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등의 앞서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4. 4. 피고 연우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연우에 채권최고액을 148,371,339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9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B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 B의 물상보증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회사의 피고 연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연우의 주장 내용도 이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물상보증행위임을 전제로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705,000,000원	1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61,081,341원
신한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00,000,000원	2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95,000,000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48,371,339원	3	페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7,688,000원	
2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제801호	200,000,000원	4	주식회사 와이오엠에 대한 대여금채무(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채무)	275,300,000원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44,000,000원	5	D에 대한 채무(C오피스텔에 설정된 D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95,000,000원	
합계	312,628,661원		844,069,341원		

2) 이에 대하여 피고 연우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로 담보되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권 설정 부분이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것과 달리 가압류 부분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포함할 수는 없다.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399,000,000원의 국민은행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각 261,081,341원과 334,000,000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561,081,341원(국민은행 261,081,341원 + 신한은행 30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70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연우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경제적 상황이나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연우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연우는 선의 항변을 하는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연우는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될 경우 당사로 배당되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일단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로 내부적 검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연우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피고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선의임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배당금액이 남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연우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손동환

판사강하영

판사신세희

별지

1) 피고 B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의 경우 그 피담보채무액은 소극재산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으로 산입되므로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물상담보로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 포함)의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하였다.